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계열사를 포함한다)이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